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(17.5.31.기준)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의료분쟁조정위원회	119	113	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」 제19조
2	의료사고감정단	159	153	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」 제25조
3	감정위원추천위원회	9	9	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」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, 13조
4	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	9	8	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」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	해당 없음	-	-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3	파견법 제20조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	해당 없음	-	-

※ 심의·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